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132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1. ○○군수
	소송대리인 ○○○○공단 담당변호사 ○○○
	2. ○○시장
	3. ○○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구단1078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군수가 2018. 3.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2,759,560원, 농어촌특별세 13,264,890원 합계 166,024,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18.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8,298,400원, 농어촌특별세 716,540원 합계 9,01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18. 4. 10.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169,060원, 농어촌특별세 3,662,940원 합계 45,832,000원의,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5,653,820원, 농어촌특별세 490,960원 합계 6,144,780원의, 원고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66,380원, 농어촌특별세 318,460원 합계 3,984,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 3쪽 4줄의 "이후"를 "존속 회사인 분할 전 회사는"으로 고친다.

○ 4쪽 2줄의 "지방세법 제5항"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1)]

1) 원고 B는 신설 회사 설립 당시인 2006. 5. 23.부터 현재까지 신설 회사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신설 회사를 지배하였다. 신설 회사 설립 당시 G, H, I, J, K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원고 B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1. 3. 14.부터 2015. 12. 31.까지 신설 회사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인 원고들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B는 신설 회사 설립 시 친족관계에 있는 G, H의 각 지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K, I의 각 지분을 합하면 85%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이후에도 원고 B 및 원고 B와 친족관계에 있는 H의 지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K, 원고 C의 각 지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의 지분 등을 합하면 2011. 3. 14.에는 89.52%, 2104. 12. 26.에는 96.63%, 2015. 12. 31.에는 96.63%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그 주식 증가분 7.11%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과점주주의 지분이 14.1%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1)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위적 주장, 즉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면, 이후 지분이 증가되더라도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원고들의 2022. 12. 1.자 준비서면 2쪽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과점주주들은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 ○○군수, ○○시장은 간주취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였으므로 피고 ○○군수, ○○시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관련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보았거나, 갑 제6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인하여 타인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는 방법으로 분할 전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분할 전 회사를 지배하였고, 2006. 5. 23. 신설 회사를 설립하면서도 그 무렵 분할 전 회사의 주주인 G, H, I, J, K에게 신설 회사의 주식 100%의 명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 회사, 원고 C, K, L 주식회사, M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4. 12. 26. 및 201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B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기간 동안 신설 회사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인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 B는 1990. 2. 20.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건설업을 하였다. P은 Q과 R의 연대보증인이었는데, 1995년경 위 두 회사의 부도로 인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 B는 P의 대표이사로서 P의 S공제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 B는 1996. 9. 5.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고, T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N을 운영하였다. N은 1997. 5. 30.경 O 주식회사, 2001. 6. 22.경 분할 전 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등기를 마쳤다. 2006. 5. 23. 분할 전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여 신설 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무렵 분할 전 회사의 주주인 G, H, I, J, K가 그 지분비율대로 신설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6. 12. 29. 분할 전 회사에 보낸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관련 재검토 회신'에서 '보증채무가 발생한 P의 대표이사가 분할 전 회사의 경영실권자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완제 전에는 보증거래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보증거래를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 B는 1996년경 N이 설립될 당시부터 신설 회사에 이르기까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였고, 분할 전 회사는 물론 신설 회사의 내부 서류에도 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다.

다) K는 '원고 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분할 전 회사의 주식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3242 등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3990 판결).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회사 직원인 원고 C, U(원고 C는 2004. 3.경부터 2016. 3.경까지, U는 2006. 2.경부터 2016. 2.경까지 근무하였다)는 물론 K도 '원고 B가 분할 전 회사, 원고 회사, 신설 회사,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각 회사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K는 자신 명의의 주식 중 10%는 공로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N이 약 25년 전인 1996년경 설립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회사(상호 변경 전 회사 포함)의 모든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원고들은 N의 주주 V, W, 분할 전 회사의 주주 X, Y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신설 회사의 주주 포함)에 대하여 주금납입자료, 증권거래세 납부자료, 주주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는바, 위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원고 B가 분할 전 회사의 주식 100%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분할 전 회사를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 ○○군수는 원고 C가 2004년부터 상당기간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보았으므로 그 무렵에 있었던 주식변동 내역에 대한 원고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C가 2004. 3.경 분할 전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경까지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C는 2012. 7.경부터 신설 회사의 재무, 회계 업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도 함께 담당하면서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업무를 직접처리하기도 한 점, 원고 C의 진술은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U의 진술, K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적어도 J(15%), M(7.11% = 2011. 3. 14.경 M 명의의 신설 회사 주식 10.48% - 2014. 12. 26.경 3.37%)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초기 단계에서 J, M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20. 5. 29.자 준비서면(13쪽)을 통하여 원고 B가 신설 회사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점, 일부 주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들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설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J과 M는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앞서 본 분할 전 회사, 신설 회사의 소유와 지배에 관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신설 회사의 주주인 J과 M 또한 명의수탁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지분변동을 신고함으로써 원고 B는 최초 과점주주가 될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에 이르러 이미 신고한 주식지분변동 내역과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B는 신용불량 문제로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N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신용불량 문제가 해소된 2011년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B가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 회사는 분할 전 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고,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그대로 신설 회사의 주주가 되었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므로, 신설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들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분할 전 회사나 신설 회사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분할 전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음에도 신설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자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